

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제품명	분말형 음이온성 고분자 응집제
-----	------------------

1. 화학 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분말형 음이온성 고분자 응집제
제품명	혼합물
제품유형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응집제 및 침전제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
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공급자의 정보	
회사명	세인상사 (주)
주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
긴급전화번호	당 7층
팩스	+82-2-3474-8161
E-mail	+82-2-3473-0825
	sein@seinchemicals.com

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해당없음
나.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해당없음
신호어	해당없음
유해·위험문구	해당없음
예방조치문구	해당없음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	바닥에 수용액 혹은 물에 젖은 분말제품이 있을 경우 표면이 매우 미끄러움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2-프로펜산 나트륨 2-프로펜아마이드 중합체 (SODIUM 2-PROPENOATE 2-PROPENAMIDE POLYMER)
관용명 및 이명	2-프로펜산, 2-프로펜아마이드와의 중합체, 나트륨 염 (2-PROPENOIC ACID, POLYMER)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25987-30-8
함유량 (%)	88 ~ 95
화학물질명	물 (WATER)
관용명 및 이명	디수소 산화물 (DIHYDROGEN OXIDE)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7732-18-5
함유량 (%)	5 ~ 12

4. 응급조치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눈에 들어간 경우 눈꺼풀을 들어올려 15분 동안 물로 충분히 씻어 내십시오. 지속적인 안구염증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많은 양의 비눗물로 씻어내고 오염된 의복과 신발을 모두 벗으십시오. 지속적인 자극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흡입했을 때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십시오.
라. 먹었을 때	특별한 응급조치를 필요로 하는 유해성은 없습니다.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물로 입을 깨끗이 씻어내고 구토 유도를 하지 마십시오.
바. 기타정보	특별한 응급조치를 필요로 하는 유해성은 없습니다.
	해당없음
	바닥에 수용액 혹은 물에 젖은 분말제품이 있을 경우 표면이 매우 미끄러움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물, 물분부, 내알콜포말, 이산화탄소, 건조화학적제
경고! 바닥에 수용액 혹은 물에 젖은 분말제품이 있을 경우
표면이 매우 미끄러움.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열분해 생성물

탄소산화물, 질소산화물

시안화수소 :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연소시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보호구

화재발생시, 호흡보조장비를 착용 하십시오.

라. 기타정보

바닥에 수용액 혹은 물에 젖은 분말제품이 있을 경우 표면이
매우 미끄러움

6. 누출 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바닥에 수용액 혹은 물에 젖은 분말제품이 있을 경우 표면이
매우 미끄러움

보호구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비상절차

8.의 누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참조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사람들의 접근을 금지함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물에 닿지 않도록 함

소량 누출시

물로 세척하지 마십시오. 즉시 쓸거나 진공청소기를 이용
하십시오. 적절한 밀폐용기에 보관하여 폐기하십시오.

그 이후 물로 세척하십시오.

다량 누출시

물로 세척하지 마십시오. 즉시 쓸거나 진공청소기를 이용
하십시오. 적절한 밀폐용기에 보관하여 폐기하십시오.

그 이후 물로 세척하십시오.

잔여물

많은 양의 물을 멀리서 세척하시기 바랍니다.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바닥에 수용액 혹은 물에 젖은 분말제품이 있을 경우
표면이 매우 미끄러움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한 저장방법

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관용기를
밀폐하여 주십시오. 산화제와 같이 보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8. 누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 규정

해당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미분 발생시 배출기를 사용

미분제거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자연적인 환기입니다.

다. 개인보호장비와 개인보호조치

호흡기 보호

개인호흡장비는 필요하지 않음

눈 보호

총면지농도가 10mg/m³ 이상인 곳에서는 방진마스크 착용

손 보호

옆가리개가 있는 보호안경 착용

신체 보호

PVC 또는 기타 플라스틱 소재장갑 착용

추가참고사항

보호의를 착용하여 팔, 다리, 몸을 보호

라. 환경노출관리

산업위생 및 안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취급

하천, 해양으로의 배출을 삼가해 주십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과립형태의 고체, 백색

나. 냄새

없음

다. 냄새역치

해당없음

라. pH

5 - 9 @ 5 g/L

마. 녹는점/어는점

> 150°C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해당없음

사. 인화점

해당없음

야. 증발속도

해당없음

자. 인화성 (고체, 기체)

해당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폭발 위험성이 없음

카. 증기압

비연소성

타. 용해도
파. 증기밀도
하. 비중
거. 물 분배계수
너. 자연발화 온도
더. 분해 온도
러. 점도
머. 폭발성

버. 산화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나. 유해반응의 가능성
다. 피해야 할 조건
라. 피해야 할 물질
마.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열분해 생성물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경구독성
급성경피독성
급성흡입독성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호흡 / 피부과민성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흡인 유해성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공급된 제품에 대한 정보
어류급성독성

무척추동물에 대한 급성독성
조류급성독성
어류만성독성
무척추동물에 대한 만성독성
미생물에 대한 만성독성
육상생물에 대한 영향
퇴적물독성
나. 잔류성 및 분해성
공급된 제품에 대한 정보
분해
가수분해
광분해
다. 생물농축성
공급된 제품에 대한 정보
생물축적 없음
물분배계수 (Log Pow)
생물농축계수 (BCF)
라. 토양이동성
공급된 제품에 대한 정보
마. 기타 유해 영향

물에 용해됨
해당없음
0.6 - 0.9
-2
(화학구조에 기초하여) 자연발화하지 않음
> 150°C
기술자료참조
Kst = 0
2.5kJ 미만의 점화원에 비 가연성
화학구조에 기초하여 산화되지 않음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안정적
산화제에는 발열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산화제와 분리하여 보관 할 것
산화제

질소산화물, 탄소산화물, 시안화수소

미분의 흡입과 취급과정에서의 제품의 피부접촉

LD50/oral/rat > 5000 mg/kg
LD50/dermal/rat > 5000 mg/kg
흡입 시 유해하지 않음
피부자극 없음
자극없음, 사람에 따라 자극을 나타내기도 함
과민성 반응 없음
발암성 없음
돌연변이 유발하지 않음
생식독성 없음
알려진 영향 없음
알려진 영향 없음
공급된 물질에는 아무런 위험이 따르지 않음

LC50/Danio rerio/96 hours > 100 mg/L (OECD203)
LC50/Oncorhynchus mykiss/96 hours > 100 mg/L (OECD203)
EC50/Daphnia magna/48 hours > 100 mg/L (OECD202)
IC50/Scenedesmus subspicatus/72 hours > 100 mg/L (OECD201)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알려진 영향 없음
자료없음

쉽게 생분해 되지 않음
가수분해 하지 않음
자료없음

-2
~ 0

자료없음
알려진 영향 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및 폐기시 주의 사항

잔여 / 미사용 제품의 폐기물

지역과 국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십시오.

해당국가규정에 따라 매립되거나 소각 될 수 있습니다.

재활용이 비실용적일 경우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매립이나 소각 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 국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십시오.

오염된 포장

재활용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 번호 (UN No.)

UN 운송위험물질 분류정보가 없음

나. 유엔 적정 선적명

해당없음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해당없음

라. 용기등급(해당하는 경우)

해당없음

마. 해양오염물질

해당없음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해당없음

유출시 비상조치

해당없음

15. 법적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및 경고표지 부착에 적용 대상임.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에 의한 통계조사 물질에 해당 됨.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위험물에 해당되지 않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사업장) 일반폐기물

[단, 폐기물 발생 시 적법처리를 위하여 관할관청에 제반 사항을 확인 한 후 처리할 것.]

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해 기존화학물질에 해당 됨.

1) 2-프로펜산 나트륨 2-프로펜아마이드 중합체 : 기존물질 (KE-29706)

2) 물 : 기존물질 (KE-35400)

바.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1) 유럽연합 (EINECS / ELINCS) : 모든 조성에 대한 물품목록 등재

2) 미국 (TSCA) : 모든 조성에 대한 물품목록 등재

3) 캐나다 (DSL) : 모든 조성에 대한 물품목록 등재

4) 오스트레일리아 (AICS) : 모든 조성에 대한 물품목록 등재

5) 일본 (ENCS) : 모든 조성에 대한 물품목록 등재

6) 중국 (IECSC) : 모든 조성에 대한 물품목록 등재

7) 한국 (ECL) : 모든 조성에 대한 물품목록 등재

8) 필리핀 (PICCS) : 모든 조성에 대한 물품목록 등재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출처

세인상사

나. 최초 작성일자

2010.06.29

다.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11회, 2021.02.01